

농촌 다문화 가족의 복지

박 옥 임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교수

I. 서 론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결혼형태 중 국제결혼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제결혼이란 부부가 동일국적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소유자를 배우자로 선택하여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드문 현상이었으며, 국제결혼이란 주로 여성의 문제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이후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아시아 여러 나라 또는 구소련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사는 현상이 증가하였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1980년대 후반 제조업과 건설부문의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자발적인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결혼이민을 통한 이주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는 외국인 남성유입은 대부분 노동이주, 외국인 여자유입은 결혼이주가 주를 이루어 성별에 따라 외국인 이주 목적과 성격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법무부, 2007). 국제결혼의 현상은 개인적 선택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자본주의 체계의 원리와 사회, 정부, 이를 이용해 영리하는 추구하는 결혼중매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김혜경 외, 2006).

국제화 시대의 국제결혼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결혼은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주여성에게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산업화가 시작하는 1970년대 이후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촌의 젊은 연령층이 대부분 도시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결혼적령기의 남성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도농간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인하여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에는 농촌과 도시의 결혼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내 여성의 참여도가 낮아지자,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의 외국인여성과 한국 농촌총각을 이어주는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몰려있는 이유는 한국여성들의 농촌기피현상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증가로 인하여 2000년대에 들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로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금연, 2003; 최근정, 2003; 양혜우, 2005; 민경자, 2003; 충북도청, 2004; 이윤애, 2004; 박재규,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문제(광주여성발전센터, 2003; 위흠, 2003; 박현정, 2004)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II. 다문화가족의 이해

1. 국제결혼의 개념

국제결혼은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을 의미한다. 국제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하여 사는 신부를 지칭할 때 국내인권단체에서는 “이주여성”이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으나, 이주여성은 여성 이주노동자, 여성 결혼이민자, 성매매 종사 외국인(또는 이민자)여성, 국제적 인신매매 피해여성을 아우르는 복합개념이므로(설동훈 외, 2004), 혼인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이주여성” 혹은 “결혼이민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김혜경, 2006).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Zolberg, 1991; 설동훈, 2000; 설동훈·김현미·한건수·고현웅·샬리아, 2003). 그러므로 ①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나라들 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②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인의 여성 송출을 장려 또는 방관하는 정부정책, ③ 신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성을 충원하려는 유입국 사회와 그것을 묵인하는 정부정책, ④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등을 국제결혼 이주가 증가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설동훈 외, 2006).

단일민족을 고집하는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전쟁 이후 기지춘 여성과 미군들 사이의 결혼으로 인해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인 수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나(여성가족부, 2007),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는 미비한 측면이다. 그러나 한국남성과 제3세계 여성간의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이 국제결혼을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왜곡된 성비레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현재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116 : 100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제결혼정보에 의하면 현재 한국 성비의 불균형으로 남성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남성의 비율이 74.9%를 차지하고 있다(국제결혼정보단체를 통해 결혼하는 경우 95%라고 한다).

둘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모든 여성은 결혼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였지만, 현재 여성들이 관습적인 결혼보다는 자아실현을 선호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빛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

로 인해 결혼적령기를 넘긴 총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입장에 처한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결혼은 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한 남성들 중에 한국여성과 결혼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총각들이 제3세계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한다.

넷째, 결혼을 빙자한 외국인과의 인신매매성 위장결혼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종교는 이러한 국제결혼(심지어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을 공공연하게 선교행사로 자행하고 있다. 분명 돈을 매개로 한 인신매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한국총각들을 구제한다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다섯째,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정책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라 결혼을 통한 이주를 생존과 꿈을 꾀는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박정숙, 2006).

2. 국제결혼의 현황

통계청(2007)에 의하면 국제결혼 증가율은 2006년 국제결혼이 비율이 11.9%로 1990년에 비해 10배가량 증가하였으며, 그중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비율이 76%에 이른다. 국제결혼의 초기에는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과의 결혼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한국남성이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단위 : 건, %)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1990	399,312	4,710(1.2)	619(0.2)	4,091(1.0)
1995	398,494	13,494(3.4)	10,365(2.6)	3,129(0.8)
2000	334,030	12,319(3.7)	7,304(2.2)	5,015(1.5)
2003	304,932	25,658(8.4)	19,214(6.3)	6,444(2.1)
2004	310,944	35,447(11.4)	25,594(8.2)	9,853(3.2)
2005	316,375	43,121(13.6)	31,180(9.9)	11,941(3.8)
2006	332,752	39,690(11.9)	30,208(9.1)	9,482(2.8)

자료 : 통계청, 2006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2007.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여성들의 국적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이러한 경향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국적도 다면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초창기에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일본이 주류를 이루다가 2000년대 초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출신이 다수였으나, 최근에

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출신 등으로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2004년 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던 중국 여성들과의 결혼이 2005년을 정점으로 2006년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고 반면,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들이 2005년부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2. 한국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단위 : 건,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계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100.0	-3.1
중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48.4	-29.2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0,131	33.5	74.0
일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1,484	4.9	18.2
필리핀	1,358	510	850	944	964	997	1,157	3.8	16.0
몽골	77	118	195	318	504	561	594	2.0	5.9
캄보디아	-	-	-	19	72	157	394	1.3	151.0
미국	235	265	267	323	344	285	334	1.1	17.2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9	247	333	314	1.0	-5.7
기타	779	936	1,046	1,263	1,250	1,135	1,192	3.9	5.0

자료 : 통계청, 2006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74.3%는 도시(동지역)에 거주하고, 25%는 농촌(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로의 결혼이주가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주로 농촌 노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로의 결혼이주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이혜경, 2005).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농촌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여성으로 그들의 50% 정도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다른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중국동포 여성은 상대적으로 도시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표 3.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거주지역별 현황

(단위: %, 명)

	중국 동포 (N)	중국 한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구소련	기타	전체
	(448)	(164)	(101)	(77)	(66)	(19)	(15)	(29)	(26)	(945)
도시	82.1	78.0	64.4	48.1	57.6	52.6	73.3	79.3	84.6	74.3
농촌	17.9	22.0	35.6	51.9	42.4	47.4	26.7	20.7	15.4	2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여성가족부, 2006.

국제결혼을 통한 농촌이주여성의 증가는 사회전체의 고학력화 추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그로 인한 결혼 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화(晩婚化) 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교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결혼시장의 교란 현상은 사회계층의 측면에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도시-농촌 지역의 결혼적령기 연령대별 성비를 통해서도 찾아낼 수 있다.

<표 4>에는 한국의 결혼적령기 연령대별 성비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전국의 경우 25~29세 연령대의 2000년 성비가 100.87이고, 30~34세 연령대의 같은 해 성비가 102.13이었다. 남아선호에 의한 태아살해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성비 불균형은 극심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해 면부의 성비는 각각 130.72와 117.60으로 극심한 성비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을 보면, 면부의 25~29세와 30~34세 연령대의 성비 불균형이 두드러진 것은 1980년임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 무렵부터 농촌 총각은 장가가기가 힘들어 졌으며, 그에 따라 농촌 총각들은 결혼적령기에 도시로 이주하여 결혼 후 농촌으로 다시 귀환하거나, 여성 결혼이민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러한 결혼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그 뒤에 이어진 외국인 신부의 농촌 유입 역시 성비 불균형에 의하여 촉발된 것이다.

통계청(2007)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경우가 도시의 경우 8.9%(2005년)에서 7.7%(2006년)로 다소 감소한 반면, 면단위 지역에서는 16.1%(2005년)에서 18.1%(2006년)로 증가하였다. 면단위의 농어촌지역에서는 전체 결혼건수의 18.1%(2006년)가 외국인 여성을 배우자로 둔 다문화 가정이다. 특히 2005년 농림어업 종사자(남자)의 경우 총 결혼 8,027건 중 국제결혼이 2,885건(35.9%)으로 3건 중 1건을 차지하며, 농어촌의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국제결혼이 정착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현상 해결의 일환으로 특정나라 여성들과 농촌총각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외국인여성들은 단순 방문자나 노동자가 아닌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주민’인 동시에 차세대 지역인적자원을 키우는 어머니의 역할로서 이주여성 과 다문화가족에 대해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표 4. 결혼적령기 연령대별·도농별 성비(1960~2000년)

연령대	연도	전국	도시	농촌	
				읍부	면부
20~24세	1960	106.50	100.49	101.63	110.23
	1970	106.06	92.81	104.94	125.80
	1980	104.12	89.49	109.72	151.61
	1990	109.15	96.55	124.37	187.70
	2000	111.44	105.84	122.66	161.82
25~29세	1960	92.00	83.10	87.46	97.31
	1970	99.04	99.63	93.04	99.57
	1980	99.98	98.00	97.87	108.05
	1990	99.46	96.49	99.23	123.15
	2000	100.87	98.46	98.61	130.72
30~34세	1960	87.68	85.96	85.12	89.05
	1970	102.25	109.05	100.82	95.70
	1980	105.53	105.79	106.15	104.44
	1990	103.77	102.70	107.09	109.43
	2000	102.13	100.61	102.80	117.60
35~39세	1960	94.29	99.54	93.50	91.72
	1970	97.44	103.77	98.59	91.86
	1980	102.83	107.34	103.66	92.40
	1990	106.13	105.72	111.55	105.60
	2000	102.32	100.16	112.65	114.21

주: 성비는 각 연령대 여성 인구를 100으로 한 값에 대한 비(ratio)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nso.go.kr>.

표 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거주지 분포

행정구역	2005		2006	
	인원	%	인원	%
전국	31,180	9.9	30,208	9.1
동부	23,132	8.9	21,052	7.7
읍부	2,403	9.6	2,697	10.0
면부	4,832	16.1	5,682	18.1
서울시	7,637	10.7	6,168	8.3
경기도	7,341	10.1	6,492	8.4
강원도	769	9.1	795	9.1
충북	920	11.0	953	10.3
충남	1,378	11.4	1,472	11.0
전북	1,385	13.6	1,343	12.9
전남	1,327	13.3	1,582	15.1
경북	1,489	10.2	1,885	11.7
경남	1,636	8.8	2,240	10.8
제주도	231	6.8	277	7.7
국외	793	5.5	943	7.8

주: 통계청 정보시스템(2007), 시군구통계자료.

3. 국제결혼의 문제점

(1) 빈곤문제

2005년도 가구 당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국제결혼 가정의 절반이 넘는 52.9%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가정의 절대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50%이하의 수준에 있는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44.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동포 이주여성가구가 빈곤상황이 기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심각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2005). 최근 전남과 광주 인근 지역의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한 김오남(2005)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월평균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48.9%, 150만원 이하까지 포함한다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결혼가정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거는 이주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일정한 직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결혼으로 인한 빚을 갚아야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 이는 결혼조건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남성의 경제적 조건이 우세하다는 것과는 달리 경제적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더욱 가족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전라남도, 2006)

(2) 가족간 갈등문제

국제결혼이주여성보다는 한국남성이 더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뿌리 깊은 한국 가족의 가부장적 체제, 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문화차이, 단일민족임을 강조해 왔던 한국의 역사적 배경 등이 가족갈등의 원인으로 언급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가족갈등의 양상을 가족관계의 근간이 되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부갈등,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해 자녀양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관련문제, 이주여성에게 중요한 지원자이면서 동시에 갈등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는 친인척 관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전라남도, 2006).

① 부부갈등

부부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편과의 성격차이(33.4%), 생활방식의 차이(22%)를 지적하였다(보건복지부,2005). 특히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는 이주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로서 아내로서 대하기보다는 지시적이고 한국 여자와는 다르게 취급되는 점에 대해 불만이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무시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처음에는 외국인과 결혼했으므로 이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부부간의 갈등과 좌절은 더해 간다. 말을 안 해도 아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고맥락문화”(유명기,1997)에 익숙한 남편은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할 능력과 태도,

그 필요성도 알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한다고 하겠다.

기존 연구들(강유진,1999; 윤형숙,2004)은 의사소통의 장애, 어려움을 부부갈등의 원인이자 양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언어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렵기 때문에 부부간 상호이해와 친밀감의 교류는 다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부부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한다.

부부폭력은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의 하나이다. 이들 가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남편의 성격장애나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이유로 부부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또한 남편자신의 생활기반이 약하고 아내와 나이차이가 많아 젊은 아내에 대한 위기감, 가출할 수 있다는 의혹 등이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전라남도 여성정책과,2004). 즉 폭력과 폭언은 아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주로 행해진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을 조사한 결과 폭언이 가장 일반적이었으며(58.8%), 뺨을 때리는 등 물리적 폭력(17.6%)도 상당한 수준이었다(광주여성의전화, 2004). 지난한해 언어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31%,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은 10-14%이었다. 현재 별거하거나 이혼한 이주여성들 중 부부폭력의 경험율이 높은데 언어폭력은 70-80%,신체적 폭력은 50%, 남편으로부터의 성행위강요는 40%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의 가장 극단적인 표출방법인 폭력이 매우 보편화된 갈등양상으로 자립잡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로 비추어진다.

통계청의 이혼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여성의 이혼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별거나 이혼을 하였다면 더욱 구별이 어렵게 된다. 법무부(2001)가 2월에 실시한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국내체류실태조사에 의하면 2001년 2월 방문동거자격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총 20,172명으로 이 가운데 이혼(별거)사례는 111건으로 0.6%에 불과하지만 무단가출과 기타(무단전출)를 포함한다면 10%에 가까운 외국인 배우자가 내국인과 동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단가출자 및 기타자(1,763명)의 대부분은 중국인(1,206명)과 필리핀인 배우자의 3.8%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2005)조사에서도 전수조사는 아니나 국제결혼 이주여성대상자 가운데 별거나 이혼인 경우가 12%로 나타났다는 점을 주의를 요한다. 특히 중국한족의 28%가 가정해체를 경험하였다. 중국동포의 경우에도 14%가 별거나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라남도, 2006).

표 6. 외국인 처의 이혼 건수 (단위 :건,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583	1,611	2,444	4,010
증감률	-	176.3	51.7	64.0

출처: 통계청 정보시스템(2007). 농림어업중사자와 외국인 처와의 혼인 <http://www.kosis.kr>

② 자녀문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남편과의 자녀양육방식의 차이가 가족갈등의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녀를 엄하게 키워야한다는 남편과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여성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는 이주여성과 아버지의 대를 이어 받는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와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는 부부갈등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보건복지부(2005)의 보고에 따르면 이주여성과 자녀관계를 보면 전체의 64.3%가 자녀와 집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거의 매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본과 필리핀 어머니들이 다른 나라 어머니보다 자녀와 더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혼한 경우 전처소생의 자녀와는 거의 대화가 없는 비율이 39%나 되었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60-70% 정도 되며 자녀의 생활태도나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대화나 함께하는 시간 등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낮다. 부모의 이중 언어 사용으로 인한 적절한 언어습득이 되지 않거나 지연이 되어 언어장애나 말더듬과 같은 언어문제를 호소하였으며, 또한 열악한 가정환경, 교육기회의 상대적 박탈,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인하여 자녀의 원만한 또래관계형성과 학업성취 의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자녀의 심리·정서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 그들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7.6%이다(보건복지부,2005). 그로 인해 자녀들이 현실문제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TV중독, 컴퓨터중독, 행동장애에 몰입하거나 탐닉하게 되며, 자신들의 내적 불안정에서 오는 긴장감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탈행동을 하기도 한다(전라남도 여성정책과, 2004). 또한 가족 내 언어소통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이 자녀의 숙제를 거의 봐주지 못하는 비율도 55%나 되었다(보건복지부, 2005).

③ 시부모 및 친인척문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남편의 핵가족을 벗어난 친족망에 쉽게 편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주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남편의 친족망에 편입되었지만 일상 생활에서 친척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는 못하고 있었다.

시부모와의 갈등은 이주여성에게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성지혜,1996: 홍기혜,2000). 보건복지부(2005)보고서에서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은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윤행숙(2004)은 고부간의 갈등과 시어머니의 학대양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며느리를 구박하고 아들에게 며느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아들의 마음을 붙들어 매어 두려고 하며, 시부모가 가정경제권을 장악하고 아들과 며느리 모두 시키는 대로 하게 하는 것, 남존여비적인 태도를 갖고 남성은 하늘, 여성은 땅 무조건적인 아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것,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주입시키며, 시집식구가 폭언이나 폭력행사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은 경우 욕을 하거나 심하게는 폭력을 행사한다. 또한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못 어울리게 하거나 지역사회사람과 관계를 갖지 못하게 집밖에 출입을 통제하며 사랑, 이해, 순종, 칭찬 등 가부장적 기대에 부응하여 살기를 강요하며 기대에 어긋날 때 칭송은 언제든지 거두어지고 통제의 언어와 행동이 나온다(전라남도,2006).

Ⅲ. 다문화가족의 복지 정책

다문화가족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2006년 4월 12개 부처가 참여하고 7개 주요 과제 및 26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중앙정부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었다.

종합대책은 크게 7가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① 여성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지원사업(가정폭력 피해자 긴급구제 및 의료시스템 등), ②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 및 교육사업(한국어 교육과 직업훈련), ③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교과과정 및 교과서의 다문화 교육강화,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운영, 다언어로 제작된 교육지원시스템, 방과 후 교실, 멘토링 또는 학생도우미), ④ 국제결혼을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계획(혼인비자발급, 전화상담서비스, 결혼중개업관리, 국제결혼관련 광고 및 소비자 보호 등), 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복지지원(생활능력 없는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급, 직업교육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산모도우미, 등), ⑥ 공공 부문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및 인식강화(지역사회분위기 진화, 정부홍보매체 활용), ⑦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구축(여성가족부 주관 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지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활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건 및 복지문제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년 4월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이 발표된 이후 방과 후 학교, 한글학교,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6년 5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였고, 실천사례 나눔 대회, 국제이해교육포럼 운영, 교육지원방안 연구보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교육부는 학교중심의 교육지원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한국문화이해 체험활동 운영, 한국어 학습프로그램, 방과 후 학교운영,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법무부는 16개 부처가 참여하고 8개 주요과제로 구성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 관련 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였다. 또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여 2007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외에도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결혼이주 여성 가정 한국어교육지원 사업 등이 있다(김경아, 2007).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1개소를 전국에 설치하여 결혼이민자가족들이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관리기관으로서 종사자교육, 지원방문,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교육적 사업에는 한국어, 문화, 가족, 정보화, 직업 영역으로 진행되었고, 상담사업, 자녀보호 사업, 자조집단사업, 문화·정서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였다(여성가족부, 2007).

표 7. 센터의 사업실적 및 내용 요약(2006.12.31)

사업분야		사업내용
교육 사업	한국어	한국어교실 / 한국어 가정방문교육 / 한국어 초급 / 한국어 중급)/한국어모토교육
	문화	한국가요교실 / 요리교실 / 공예교실 / 한국음식만들기 / 외국인부모 문화교육 / 한국의 가족문화교육 / 한국의 역사·사회적 배경교육 / 몽골음식 만들기 체험 / 사회극 / 예절교실 / 무용교육 / 영화교실 / 동요교실 / 다도교실 / 사회적응훈련 / 송편만들기 / 한국생활문화체험 / 종이공예 / 유아정보교류광장 / 건강지킴이 책자개발 /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 / 음악회 관람 / 동화구연교육 / 산업체견학 / 우리고장바로알기 / 결혼이민자의 경찰서이용에 관한 교육 / 결혼이민여성모성보호 교육 / 반짓고리함 만들기 / 숲체험 / 문화유적답사 / 도자기만들기체험
	가족	여성폭력예방교육 / 부모교육 / 배우자프로그램 / 가족과 성 / 이유식교육 / 부모교육 / 가족교육 / 일상생활문화교육 / 가족모임 // 가족관계증진 교육 / 이주가정 대 국내가정 연결 / 부부교실 / 가족상담캠프 / 가정폭력 교육 / 배우자모임 / 가족세미나
	정보화	이주여성정보화교육 / 미디어교육 / 컴퓨터교실 / 인터넷교실 /
	직업	뜨개질수업 / 직업상담원양성교육 /의류리폼사 / 베이커리교실 / 네일아티스트 / 한식조리 / 피부마사지 / 운전면허 취득교육 / 다문화강사 / 원어민강사 가정폭력상담사 / 직업능력향상 교육-중국어강사 활용
상담사업	개별상담 / 가족상담 / 집단상담 / 부부상담 / 가정방문상담 / 법률상담/ 전화상담 / 사례회의 / 각종 치료상담/ 셀프 영화상담	
자녀보호사업	아기사랑 / 자녀캠프 / 보육서비스 / 한국어교육 / 수학학습 / 아동미술 / 미디어교육 / 몽골어교육 / 음악교육 / 재즈댄스강습 / 방과후 학습 / 인권교육 / 러시아교육 / 영어교육 / 보육지원 / 관내 보육시설 연계 / 자녀사회적응능력향상 / 자녀학습능력향상 연계 / 자녀-친구맺기 / 교육비 지원 / 외국어캠프 지원 / 자녀수탁 어린이방 운영 /	

	한솔교육희망특공대 / 아이돌보미 지원 / 자녀를 위한 즐거운 공부방 / 등산 / 문화교육 아카데미 / 지역아동센터 결연 / 놀이지도 및 동화읽기 / 청소년 멘토링 / 자녀놀이치료 / 미술치료 / 아동 도서대여 / 자녀개별방문학습지도 / 인형극 발표
자조집단사업	자조집단형성 / 배우자모임 / 자조모임 / 결혼이민자가정방문 / 농악동아리형성 / 자조집단지도자양성교육 면단위 리더모임 / 출신국별 자조모임 / 결혼이민자여성 자조모임 / 가족♡가족 / 시부모모임
문화·정서 지원사업	한국문화탐방 / 가족초청큰잔치 / Port-Luck Party-가족음식나누기 / 결혼이민자가족체험수기 / 결혼이민자가족 사진전 / 다문화가족선언문 선언식 및 플러스 이미지 캠페인 / 결혼이민자가족수필집 출판기념회 / 다문화가족 가을운동회 / 결혼이민자가족자녀 정체성확립을 위한 친구와의 캠프 / 여성결혼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 / 전통혼례 / 가족송년의밤 / 출산도우미 무료과견 연계 / 한국인친정어머니만들어주기 / 산모도우미 지원 / 합창단 / 결혼이민자가족대축제 / 멘토 맺기 / 합동결혼식 / 어린이날 체험행사 / 러브인아시아 / 국내가정 결연 매칭 및 교육 / 가족한마당 / 모든나라 아시아축제 / 마을공동체교육 / 의료진료 / 다문화연극 극단 '톡톡' 연극공연 / KBS 열린음악회 / 가족영화제 / 찾아가는 한방의료 서비스 한방진료
홍보 및 네트워크형성	지역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회 / 지역내 유관기관 역량강화 교육참가 / 지역축제 참가 / 세미나 개최 / 리플렛 제작 / 매체홍보 / 멘토교육 / 한국어교실 협력기관 협약 체결 / 한국어교실 운영기관 간담회 / 한국어강사 양성교육 / 군여성단체협의회와 자매결연 / 관내 협의체 구성회의 / 한국어자원봉사교육 / 한국어강사 간담회 / Happy Family 자원봉사단 대상 한국어교육 / 자원봉사자 연계지원 / 실태조사 / 욕구조사 / 자원봉사자 교육 / 전문강사교육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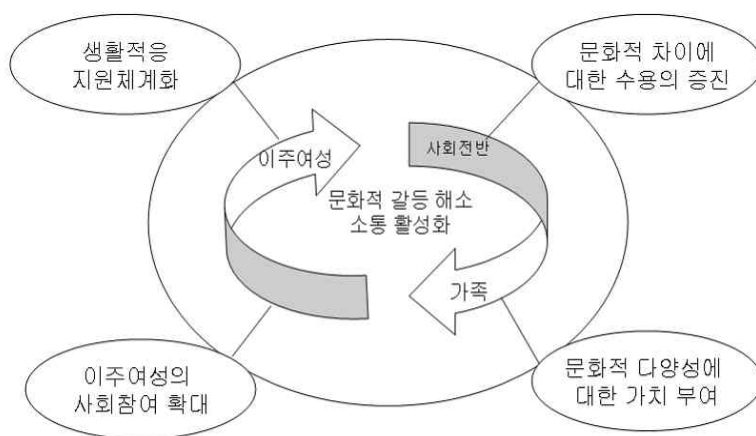
IV. 결 론

외국인 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이 매년 증가하여 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남녀의 성비 불균형과 여성 독신자 비율이 증대되는 등의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특성과 농촌총각의 내국인간의 결혼에서 소회된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현상이 증가되는 원인을 들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다문화가족이 정착되고 있는 현 시점이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현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전통이 없고, 순혈주의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시각이 불쌍하다고 본다든가, 무턱대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장 결혼자가 대다수라고 보는 부정적 측면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 보호대책이 미비한 상태이며, 이를 위한 행정·사법당국의

관리감독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다문화가족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과 사회문제의 근원으로 보는 시각의 수정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양성간의 관계와 다양한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한국어교육이나 문화체험수준이 아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문화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국민들의 비교문화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림1>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여성가족부,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어 다문화가족지원법(가칭) 제정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및 효율화의 방안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이를 확대하기로 하였다(여성가족부, 2007). 2006년 21개소였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2007년에 38개소로 확대하였고, 2010년까지 14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여성가족부,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을 위하여 많은 이주여성들이 풍습과 가풍을 모르거나 언어가 서툴러서 하는 행동을 설명해 주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뿐 아니라 문화이해 교육서비스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 결혼이민자 및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가족교육과 상담의 지속적

인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법무부 자료(2006. 5)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중 여성결혼이민자는 88.5%이며, 대부분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층이며, 특히 20~30대 여성 결혼이민자는 64.2%라고 하였다. 현재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34.2%(2007.03.2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이며, 미취업 여성 결혼이민자의 80%이상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민자에 적합한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과 더불어 직업훈련과정 안내 및 취업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정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여성의 자녀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언어가 서툰 이주여성의 특성상 자녀학습지체, 언어장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보육현장에서도 이런 문제들과 더불어 피부색과 외모 차이로 인하여 또래집단에게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의 자녀와 일반가정의 아동과의 통합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방안을 수립과 교과과정에 다문화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는 등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은 다문화가족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정서·심리적 폭력과 외부와의 단절 등 다양한 폭력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피해자의 보호나 지원은 부족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결혼이민자를 외국인인 아닌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사회 전반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사회통합적 지원이 체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유진(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광주여성발전센터(2002). 보도자료: 광주 전남 외국인 여성실태조사.
- 광주여성의 전화(2004). 광주 · 전남지역 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성의 전화 부설 광주가정폭력상담소.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 김경아(2007). 다문화가정 이주여성현황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김민정, 유명기, 이혜경, 정기선(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 39(1), 15-193.
-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기념 심포지엄 학술대회 자료집.
-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4). 2004. 12. 23.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에 대한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 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고서.
- 설동훈(2003).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극복방안. 한국사회학회/한국 문화인류학회공동심포지엄-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221-238.
- 신경희(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선진(2004). 국제결혼과 여성폭력-국제결혼한 필리핀여성을 중심으로-국제결혼이주여성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워크샵. 전라남도(여성정책과).
- 양순미 · 유영주(2002). 농촌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 역할수행평가, 역할상이성이 결혼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75-91.
- 양순미(2006b).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농촌사회학회, 2006 정기학술대회자료집.
- 여성가족부(2005). 2005. 9. 여성결혼 이민자의 한국문화와 결혼생활 정착 지원발표.
- 여성가족부(2007).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여성가족부(2007). 제 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안.
- 위 흙(2003).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2003년 6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 윤형숙(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한국여성학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 이성희 · 하근영(2000). 전라북도 거주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실태조사(1): 가족관계를 중

- 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 123-138.
- 이혜경(2004). 국제결혼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충북 외국인 주부정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 임경혜(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전라남도 여성정책과(2004). 국제결혼 이주여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 전라남도(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보고회 자료집.
- 정영덕(2004).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 연구”, 한일장신대기독교 석사논문.
- 통계청(2007). 2006년 통계자료.
- 한국가족관계학회(2006). 농촌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 한국농촌사회학 공동세미나.
- 한국염(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 사회학적 분석. 이주여성인권센터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현황

(2007. 3. 현재)

시 도	센 터 명	전 화	비 고
서울시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2-953-0468	
	영등포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2-2678-2193	
	동대문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2-957-1074	
부산시	부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51-320-8342	
	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51-610-2027	
대구시	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53-475-2324	
	달서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53-580-6819	
인천시	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32-440-6541	
	강화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32-933-0980	
광주시	서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62-383-4141	
대전시	중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2-252-9989	
울산시	남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52-274-3136	
경기도	수원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31-257-8501	
	부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32-320-6442	
	안성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31-671-0631	
	남양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31-590-8122	
강원도	춘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33-251-8009	
	강릉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33-648-3014	
충청북도	청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3-223-5253	
	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3-733-1915	
충청남도	아산		
	공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1-856-0881	
	금산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1-750-3990	

전라북도	익산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63-850-6046	
	장수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63-352-3362	
	김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63-545-8506	
전라남도	순천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61-744-1050	
	나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61-331-0709	
	영암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61-463-2929	
	전라남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62-673-3188	
경상북도	구미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54-464-0545	
	예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54-650-6217	
	포항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54-270-5554	
	문경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54-550-6525	
경상남도	경상남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55-279-7000	
	진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55-755-1744	
	김해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55-329-6349	
제주도	제주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64-712-1140	